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6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김문수・주철현・채현일

박지원・박해철・김 윤

권향엽 · 이광희 · 이수진

조계원 · 허성무 · 한준호

박희승 • 김우영 • 신정훈

정성호 • 민홍철 • 강준혁

의원(1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.

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육성은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령화된 산림·임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,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,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, 제17조제1항 및 제3항, 제30

조제2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"예비임업인"이란 임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4의3. "청년임업인"이란 임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, 나이, 거주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임업후계자를"을 "임업후계자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일"로, "임업후계자가"를 "임업후계자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임업후계자로"를 "임업후계자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입엄인으로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 중 "또는"을 각각 ",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인 또는"으로 한다.

제30조제2호 중 "임업후계자 및"을 "임업후계자, 예비임업인, 청년임업인 및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- ② (생략)
- ③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있다. 다만, 제2호·제4호 및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·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 우
- 2. 임업후계자 <u>또는</u>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
- 3. (생략)
- 4. 임업후계자 <u>또는</u>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
- 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<u>또는</u>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③
임
업후계자, 예비임업인 및 청년
<u>입엄인으로</u>
1, 예비임업인 및
<u> 청년임업인 또는</u>
2, 예비임업인 및
<u> 청년임업인 또는</u>
 이 (원레기 기호)
3. (현행과 같음) 4, 예비임업인 및
<u> 청년임업인 또는</u>
5
o, 예비임업
<u> </u>

제30조(청문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.

- 1. (생략)
- 2. 제17조제3항제1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<u>임업후계자 및</u>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
- 3. ~ 5. (생 략)

제30조(청문)
,
1. (현행과 같음)
2
<u>임업후계자, 예</u>
비임업인, 청년임업인 및
3. ~ 5. (현행과 같음)